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7
----------	-----

제출년월일 : 2025.11.1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 안정 도모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영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인상 : 안 제8조

-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 25만원”을 “월 30만원”으로 한다.
- 2) 제4항 중 “월 5만원”을 “월 20만원”으로 한다.

나. 지급신청과 요건확인의 명확화 : 안 제9조

- 1) 제1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을 “보훈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 2) 별지 1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 증명서)”를 “보훈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6년 당초예산 반영(2,718백만원)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 예고(2025.9.19.~2025.10.9.) 결과, 특이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393호, [복지정책과-28941(2025.9.19.)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4672(2025.9.17.)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4672(2025.9.17.)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34928(2025.9.18.)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16230(2025.10.20.)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17900(2025.11.13.)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 25만원”을 “월 30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월 5만원”을 “월 20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을 “보훈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1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를 “보훈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금액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u>월 25만원</u> 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 자가 사망한 경우 평창군에 주 소를 둔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월 5만원</u>의 참전유공 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9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① (생략) 1. 국가유공자의 <u>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u> 1부 2.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u>월 30만원</u> 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 자가 사망한 경우 평창군에 주 소를 둔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월 20만원</u>의 참전유공 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9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유공자의 <u>보훈신분증 사본</u> 1부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보훈(참전)등록번호		- -			
신청 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 처	
수당 지급 계좌	금융 기관 명			계좌번호	
	변경 내용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청 인 제출 서류	1. 국가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보훈(참전)등록번호		- -			
신청 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 처	
수당 지급 계좌	금융 기관 명			계좌번호	
	변경 내용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청 인 제출 서류	1. 국가유공자의 보훈신분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보훈(참전)등록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당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변경내용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의 <u>보훈신분증 사본</u>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인) 2. 입금계좌 확인 정보(통장사본)			

관계법령 발췌

□ 국가보훈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보훈영예수당 인상(25만원 ⇒ 3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인상(5만원 ⇒ 20만원)
- 나. 관련 조문: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현황: 633명

(기준: 2025년 현재)

자격구분		내 용	인원 (명)
계			633
본인 (7종)	소계		352
	전상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30
	공상군경	국가수호, 국민생명보호 등과 직접 관련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49
	무공수훈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군인 중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10
	보국수훈자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	56
	참전유공자	6.25, 월남 전쟁에 참여한 사람	198
	공상공무원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북파공작활동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	5
유족 (8종)	소계		281
	애국지사유족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의 유족	7
	전몰군경유족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공무원의 유족	37
	순직군경유족	국가수호, 국민생명보호 등 직접 관련있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군인·소방·경찰의 유족	21
	순직공무원유족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15
	공상군경유족	공상군경의 승계받은 유족	14
	무공수훈자유족	무공수훈자의 승계받은 유족	81
	전상군경유족	전상군경의 승계받은 유족	105
	특수임무유족	특수임무유공자의 승계받은 유족	1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123명

(기준: 2025년 현재)

자격구분	내 용	인원 (명)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23

나. 추계결과(연간)

- 세입: 해당없음
- 세출

구 분	산출기초	금액(천원)	비 고
계		2,718,000	
보훈영예수당	655명 × 월 300,000원 × 12개월	2,358,000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150명 × 월 200,000원 × 12개월	360,000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연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출		2,718,000	2,718,000	2,838,000	2,838,000	2,838,000	13,950,000
보훈영예수당		2,358,000	2,358,000	2,430,000	2,430,000	2,430,000	12,006,000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360,000	360,000	408,000	408,000	408,000	1,944,000
재원 조달		2,718,000	2,718,000	2,838,000	2,838,000	2,838,000	13,950,000
자체 수입	지방세 (군비)	2,718,000	2,718,000	2,838,000	2,838,000	2,838,000	13,950,000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장 유 향 미
연락처	(033) 330 - 2150